

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22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2. 16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
- 다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4조, 제9조

3. 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-13
- 나. 운영예산 : 66.5백만 원(군비)
- 다.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라. 수탁기관 :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달성지역지부
- 마. 인 원 : 3명(관장 1, 사무장 1, 직원 1)
- 라. 주요업무
 - (1) 법률, 근로조건, 회계상담 등
 - (2)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

- (3)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- (4)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
- (5)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

4.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

- 가. 2022. 9. : 재계약 서류 접수
- 나. 2022. 11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계약 적정 판단)
 - 심사결과 : 재계약 의결(70점 이상 위원 과반수 이상)
- 다. 2022. 12. : 협약 체결
- 라. 2023. 1. : 위·수탁 개시
 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4. 12. 31.

참고**상위 및 관계법령****□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[위탁운영]**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[위탁운영]

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, 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[정의]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[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]
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[재계약]

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

